

의안번호	제8호
의결연월일	2022. 7. 29.

-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7. 14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2. 07. 14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2. 07. 21.  
제28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문화관광과장 : 정택규)

### 가. 제안이유

-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, 제2조)
- 예당호 모노레일의 운행시간, 휴무일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- 예당호 모노레일의 이용료, 이용료의 면제, 감면, 반환, 이용 제한, 게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0조)
- 예당호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기준,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- 예당호 모노레일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, 수탁자·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, 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5조)
- 예당호 모노레일의 시설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완호)

- 본 조례안은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 20조(사용허가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,  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

- 「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관계 법령에 부합하므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**4. 질의·답변요지**

- 없 음

#### **5. 토 론 요 지**

- 없 음

#### **6. 심 사 결 과**

- 「원안가결」

#### **7. 소수의견 요지**

- 없 음

#### **8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없 음